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633호 2026. 9. 30.

조 례

- 순창군 조례 제3073호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
- 순창군 조례 제3074호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3
- 순창군 조례 제3075호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6
- 순창군 조례 제3076호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12

예 규

- 순창군 예규 제35호 순창군 일반 및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6
- 순창군 예규 제36호 순창군 마을택시 운영지침 일부개정 23

고 시

- 순창군 고시 제2026-17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5
- 순창군 고시 제2026-181호 순창 군계획시설(도로, 녹지)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27

공 고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1호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 순창군 공고 제2026-934호 순창군 금고 지정 공고 31
- 순창군 공고 제2026-946호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6
- 순창군 공고 제2026-951호 순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39
- 순창군 공고 제2026-961호 순창 군 계획시설 결정(폐지)(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42
- 순창군 공고 제2026-964호 순창 군계획시설(근린공원, 대모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공고 48

회								
람								

발 행 : 순창군 (편집 기획예산실)

순창군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73호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범위) (생략) <u><신설></u>	제3조(지원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순창군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74호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4명” 을 “66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6명” 을 “643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군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되는 체납관리단
1명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 급 별 \ 기 관 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 6 1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 1 3	-				
3급	1	1				
4급	3	2		1		
4~5급	1	1				
5급	3 3	1 5	3	3	1	11
6급 이하 소계	5 7 1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					
6급 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1 3	-				
연구관	1				1	
연구사	1 2	-				
지도직 계	33	-				
지도관	3			3		
지도사	30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순창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644명</u>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626명</u>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u>661명</u> -----. 1. ----- : <u>643명</u>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직급별\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44	-						총 계	661	-					
정무직 계	1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96	-						일반직 계	613	-					
3급	1	1					3급	1	1						
4급	3	2		1			4급	3	2		1				
4~5급	1	1					4~5급	1	1						
5급	32	14	3	3	1	11	5급	33	15	3	3	1	11		
6급 이하 소계	555	-						6급 이하 소계	571	-					
전문경력관 소계	4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계	1	-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	-					5급 상당	-	-						
6급 상당 이하 소계	1	-						6급 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13	-						연구직 계	13	-					
연구관	1				1		연구관	1				1			
연구사	12	-						연구사	12	-					
지도직 계	33	-						지도직 계	33	-					
지도관	3			3			지도관	3			3				
지도사	30	-						지도사	30	-					

순창군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75호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사업 등으로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위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기관을 선
정할 수 없는 사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고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제9조제3항 중 “선정한다”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를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관리·감독에 필요한 문서,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위탁사무의 감사)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 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u> 1. <u>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u> 2. <u>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u> <u><신 설></u>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 ----- ----- . <u><단서 삭제></u> <u><삭 제></u> <u><삭 제></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u>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사업 등으로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사무</u>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u>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고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u> 4. <u>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u> 5. <u>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u>

② ~ ⑤ (생 략)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② (생 략)

③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순창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제12조(선정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생 략)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 6. (생 략)

③ ~ ⑧ (생 략)

제2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일년에 한 번 이상 점검 및 지도·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12조(선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 -----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관리·감독에 필요한 문서,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 · 제26조 (생략)

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위탁사무의 감사)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 제27조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

순창군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76호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 “커뮤니티센터”라 한다)는 순창군 금과면 아미산길 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뮤니티센터”란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 방문객 및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커뮤니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원마을 조성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

2. 전원마을 입주 희망자 상담 및 안내
3. 방문객 및 주민 등의 소통 공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커뮤니티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위탁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 및 관리자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커뮤니티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① 주민이 커뮤니티센터를 사용하거나 방문객이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커뮤니티센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행사
2. 개인의 영리 또는 단순 상업적 목적의 사용
3.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을 훼손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단체명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	
	사용시간	:	~	: 까지
	기 타			
「순창군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창군수 귀하				

순창군 일반 및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예규 제35호

순창군 일반 및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순창군 일반 및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750원” 을 “1,000원” 으로, “400원” 을 “500원” 으로, “30,000원부터 50,000원” 을 “50,000원부터 100,000원”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수도과” 를 “상하수도과” 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환경수도과” 를 “상하수도과” 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위탁검침원의 업무처리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일반주택은 검침전 1개당 <u>750원</u> , 공동주택은 검침전 1개당 <u>400원</u> 으로 한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된 곳은 일반주택의 검침수수료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침수수료 외에 검침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월 <u>30,000원부터 50,000원</u> 까지의 교통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 ----- ----- ~~1,000원~~ ----- ----- ~~500원~~ ----- ----- ----- ----- ----- ~~50,000원부터~~ <u>100,000원</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검침구역별 조 편성 운영) ① (생략)	제6조(검침구역별 조 편성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장은 조원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조별 검침구역 내에 업무공백을 사전 예방하고 긴급사유 발생시 <u>환경수도과</u> 에 통보하고 조원의 비상연락을 책임진다.	② ----- ----- -- ~~상하수도과~~ ----- -----.
제11조(계약의 해약) ① (생략)	제11조(계약의 해약) ① (현행과 같음)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환경수도과</u> 의 기구 개편, 제도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형편이 있는 때	5. ~~상하수도과~~ -----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순창군 일반 및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10.15 예규 제8호(일부개정) 2023.04.28 예규 제2801호 (조례 2801호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4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① 수도계량기 검침 및 점검업무

1. 일반 및 공동주택의 상수도 계량기를 정기 검침일에 검침하여 지침 및 사용량을 계량기 검침부에 기록하여 순창군수(이하 "갑"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업무
2. 수도계량기 정상 여부 점검업무(불 회전, 문자판불명, 침 탈락, 유리파손, 동파 등 이상이 있을 때는 "갑"에게 즉시 통지하는 업무)

② 고지서 교부 · 일반 및 공동주택의 상 · 하수도요금 고지서 및 독촉장(계고장 포함) 교부

③ 기타 부대업무

1.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및 급수업종 변경 업무
2. 수용가 민원사항(검침, 부과착오) 처리 및 통지
3. 상 · 하수도 사용료(체납 포함) 징수 독려

제3조(검침원의 자격) 순창군민으로서 수도검침을 희망하며 사무능력이 있는 63세 이하인 자로서(당해년도 중간에 63세에 달하더라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함)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자 중 관할지역 읍·면장의 추천(별지 제1호 서식)을 받은 자로 하며, 관할지역에 검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접 지역의 희망자를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개정 2023.04.28.>

제4조(결원 시 충원 및 증원) ① 위탁검침원 결원 시 충·증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일반 및 공동일반주택의 신축, 증가로 인한 검침원을 증원하여야 할 때에는 1명당 검침전 수(공동주택 2,000전, 일반주택 800전)를 기준으로 증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위탁검침원의 업무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일반주택은 검침전 1개당 1,000원, 공동주택은 검침전 1개당 500원으로 한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된 곳은 일반주택의 검침수수료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침수수료 외에 검침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월 50,000원부터 100,000원까지의 교통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침구역의 특성에 따라 검침전 수의 증감이 될 수 있다.

③ 위탁계약 검침구역 내에(신·증설이나 폐전 등) 검침전 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 변경 계약하지 않고 실제 검침전 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위탁수수료는 매월 고지서 배부 및 익월분 검침 완료 후 위탁검침원(이하 "을"이라 함)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검침구역별 조 편성 운영) ① 검침구역별(조원 8명 이내)로 조를 편성 운영하고, 조원간의 협의 하에 조장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조장은 조원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조별 검침구역 내에 업무공백을 사전 예방하고 긴급사유 발생시 상하수도과에 통보하고 조원의 비상연락을 책임진다.

제7조(업무수행 중 책임한계)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업무 및 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제반 관계규정과 "갑"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3. "을"의 검침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는 "을"이 책임을 진다.

4.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가에 제반 요청사항이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을"이 "갑"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을"은 "갑"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고의, 과실 또는 의무의 태만으로 인하여 수용가의 건물 및 시설훼손, 누진요금 등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수도 요금 등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하게 하거나 방조 또는 묵인한 때

② 제1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갑"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위탁 검침원은 어떤 경우에도 상수도 검침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매매, 대여, 상속, 증여, 신탁 등을 하거나 일체의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위탁계약) ① "갑"과 "을" 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을 체결한 검침원에게는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약) ① "을"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위탁 계약해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이행 상대가 본 계약 조항대로 이행 가망이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3. "을"이 "갑"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때

4. "갑"이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여 "을"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때

5. 상하수도과의 기구 개편, 제도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형편이 있는 때

6. "을"의 업무소홀 및 과실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별지 제5호 서식 위탁검침원 근무평정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 위탁검침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매월 실시하여 연말 및 그 전이라도 70점 미만으로 평정되었을 때

③ 계약 해지 시에는 검침업무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15일 이내에 제반 서류 및 각 세대 점검사항을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갑"은 "을"에게 관계법령 및 직무와 관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자질향상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 ① "갑"은 검침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300만원 금액의 보증보험증서(이행지급보증증권)를 예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갑"에게 예치한 보증보험증서(이행지급보증증권)는 계약이 취소 되었때 "갑"과 관련된 채권, 채무관계가 종료된 후에 반환한다.

제14조(신분증 발급) 수용가를 방문하여 검침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기간) ① 본 위탁검침 계약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갑" "을" 쌍방에서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약 전 까지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 계약은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보증보험증서(이행지급보증증권)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추천서는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한 충원 시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상해보장보험 가입) 순창군수는 위탁검침원의 검침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장 보험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마을택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예규 제36호

순창군 마을택시 운영지침 일부개정

순창군 마을택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4회” 를 “6회”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읍 터미널” 을 “면 소재지 및 읍 터미널” 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마을회관부터 읍 터미널까지 거리에 따른” 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운행노선에 의한” 으로 하고, “4회분” 을 “6회분”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 지침에 따라 등록된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본 지침에 따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운영방법) ① 마을택시 운행횟수는 1인당 월 <u>4회</u>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3조(운영방법) ① 마을택시 운행횟수는 1인당 월 <u>6회</u> 이내에서 지원한다.
② 운행노선은 각 마을에서 읍 터미널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생략)	② 운행노선은 각 마을에서 면 소재지 및 읍 터미널까지를 기본으로 한다.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③ 운행요금은 마을회관부터 읍 터미널까지 거리에 따른 택시요금으로 산정하며, 이용자에게는 월 <u>4회분</u> 의 택시요금 (생략)	③ 운행요금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운행노선에 의한 택시요금으로 산정하며, 이용자에게는 월 <u>6회분</u> 의 택시요금(생략)

순창군 고시 제2026-17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2.

순 창 군 수 (인)

○ 도로명주소 폐지 : 2건

구분	관할읍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건물번호)	건물번호		비고
				폐지일	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1층 민원과(☎650-1441)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구분	관할읍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건물번호)	건물번호		비고
				폐지일	사유	
1	순창읍	남계리 644	경천로 63	2025.9.4.	건축물대장 말소	
2	유등면	외이리 567-2	유등로 396	2026.9.16.	건축물대장 말소	

순창군 고시 제2026 - 181호

순창 군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순창 군계획시설(도로: 소로 2-151호선, 경관녹지①, 완충녹지③)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 순창 군관리계획(특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변경 부분에 한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51	8	국지 도로	1,026	인계면 쌍암리 산184임	인계면 쌍암리 산165임	일반 도로	-	지식경제부 2008-235호 2008.12.31	“선형 및 면적 변경”
변경	소로	2	151	8	국지 도로	1,026	인계면 쌍암리 산184임	인계면 쌍암리 산165임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51	소로2-151	◦ 선형 및 면적 변경 - 기정 8,200㎡ - 변경 8,114㎡ 감)86㎡ - 폭 8m, 연장 1,026m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의한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일부선형 및 면적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경관녹지	인계면 쌍암리 산166-1 일원	4,390	-	4,390	지식경제부 2008-235호 2008.12.31	“형태 조정”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인계면 쌍암리 산166-1 일원	2,547	-	2,547	”	“형태 조정”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경관녹지	◦ 형태 조정 면적 : 4,39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의한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형태 조정
③	완충녹지	◦ 형태 조정 면적 : 2,54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의한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형태 조정

■ 순창 군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72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51호선, 경관녹지①, 완충녹지③)사업

2) 명 칭 : 순창 농촌테마공원(치유농업) 도로 및 녹지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 규모(변경)

시 설 명	사 업 규 모	비 고
군계획시설 (도로/소로2-151호선)	◦ 면적 : 기정 1,710㎡, 변경 1,720㎡, 증)10㎡ ◦ 연장 214m, 폭 8m(변경없음)	
군계획시설 (녹지/경관녹지①)	◦ 면적 : 기정 284㎡, 변경 286㎡, 증)2㎡	
군계획시설 (녹지/완충녹지③)	◦ 면적 : 405㎡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순창군수(농업기술과)

2)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바.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관계도서 : 실음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과(063-650-1827)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63-650-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면	리	지 번		지 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기 정	변 경											
합 계						44,620	13,966	2,399	2,411	-	-	-	-	-	
1	인계	쌍암	728-5	728-5가	대지	12,308	4	2	4	순창군	-	-	-	-	
2	인계	쌍암	728-18	728-18	임야	507	507	1	-	순창군	-	-	-	-	
3	인계	쌍암	728-27	728-27	도로	220	220	35	35	순창군	-	-	-	-	
4	인계	쌍암	산166-1	728-30다	임야	21,682	1,562	2,109	1,562	순창군	-	-	-	-	
5	인계	쌍암		728-30라	임야		1,300		258	순창군	-	-	-	-	
6	인계	쌍암		728-30바	임야		286		286	순창군	-	-	-	-	
7	인계	쌍암	산169-1	728-32	임야	9,903	9,968	252	147	순창군	-	-	-	-	
8	인계	쌍암		728-32가	임야		119		119	순창군	-	-	-	-	

※ 참고 : 상기 ‘가’ , ‘다’ , ‘라’ , ‘바’ 기호는 지적측량결과(2026.06.12.)에 따른 임시 기호(가번지)이며, 향후 지적공부 정리 시 확정지번으로 변경될 예정임.

순창군 공고 제 2026 - 934 호

순창군 금고 지정 공고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순 창 군 수

1. 금고지정 내역

구분	총점	금융기관명	취급회계
제1금고	569.35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 일반회계 ○ 특별회계(5)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 - 공공주택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기금(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고향사랑기금
제2금고	513.81	전북은행 순창지점	○ 기금(9) - 양성평등기금 - 재난관리기금 -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 투자진흥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자활기금 - 식품진흥기금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2. 약정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946호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창군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령운전자의 정의 조정

- (1)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 에서 “65세 이상” 으로 하향 조정함. (안 제2조)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참조 : 경제교통과장] 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063-650-1335, Fax 650-133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담당자
(☎063-650-13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고령운전자”란 ----- “7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u>70세</u>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u>65세</u> 이상 -----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순창군 공고 제2026-951호

순창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산11-4번지 일원 로제비앙G.C 순창(대중형 18홀) 조성사업에 따른 순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순 창 군 수

2026년 9월 30일

1. 사업개요

- 사업명 : 로제비앙G.C 순창(대중형 18홀) 조성사업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산11-4번지 일원
- 면적 : 800,794㎡ → 801,714㎡, 증)950㎡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주요시설 : 골프장(대중형 18홀), 클럽하우스, 기타 골프 부대시설 등
- 사업자 : 신영부동산신탁(주)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⑬	순창 로제비앙C.C → 로제비앙G.C 순창 지구단 위계획구역	순창읍 순화리 산 11-4번지 일원	800,764	증)950	801,714	2023.7.21. (순창군고시 제2023-95호)	

- 구역명 변경 : 순창 로제비앙C.C → 로제비앙G.C 순창
- 면적 변경 : 800,764㎡ → 801,714㎡, 증)950㎡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에 대한 용도 등에 관한 계획 정비등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	변 경 사 유
변경	⑬	순창읍 순화리 산11-4번지 일원	801,714	•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실제 지적도 현황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계 및 면적 변경

○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7	10	집산 도로	2,500	소로1-354 순창읍 순화리 산 15-3	중로1-1 순창읍 순화리 478-12	일반 도로	-	2006. 02.22.	군도 11호 선
변경	소로	1	7	10	집산 도로	2,500	소로1-354 순창읍 순화리 산 15-3	중로1-1 순창읍 순화리 478-12	일반 도로	-	2006. 02.22.	군도 11호 선

○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7	소로1-7	• 선형 변경	• 국·공유지 분할 및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도로 선형 변경

3. 열람기간

○ 2026. 10. 1. ~ 2026. 10. 14.(공고 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의견제출)장소

- 순창군청 건설과, 순창읍사무소
- 읍사무소 게시판, 순창군 홈페이지(www.sunchang.go.kr), 토지이음(www.eum.go.kr) 게재

5. 열람내용

○ 관계도서 및 세부조서 등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과(☎ 063-650-18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상기 공고사항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관계기관(부서) 등 협의 등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 민 의 건 서

사 업 명	순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기간	2026. 10. 1. ~ 2026. 10. 14. (공고 익일로부터 14일간)			
의 건 제 출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순창군 공고 제2026-961호

순창 군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 결정(폐지)(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순창군 고시 제2020-89호(2020.05.15.)로 고시된 군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의 결정(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1. 순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문화시설, 도로) 결정(폐지)(안)

- 순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폐지)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2	문화 시설	문화예술 회관	순창읍 순화리 705번지 일원	36,630	감)36,630	-	순창군고시 제2020-89호 (2020.5.15.)	

- 순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문화시설	◦ 폐지 - 기정 36,630㎡ - 변경 -㎡ 감)36,630㎡	◦ 기존 문화예술회관을 정비·보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군계획시설(문화시설)을 폐지하고자 함.

- 순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폐지)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 지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140	순화리 499 (중로2-5)	순화리 509-2 (소로1-2)	일반 도로	-	순창군고시 제2020-89호 (2020.5.15.)	

- 순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폐지)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1	-	◦ 폐지 - 폭원 10m, 연장 140m	◦ 기존 문화예술회관을 정비·보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군계획시설(도로)을 폐지하고자 함.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4.(공고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장 소

- 순창군청 건설과, 문화관광과, 순창읍사무소
- 읍사무소 게시판, 순창군 홈페이지(www.sunchang.go.kr), 토지이음(www.eumgo.kr) 게재

3. 주민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내

나.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순창군청 건설과, 문화관광과, 순창읍사무소

4.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과(063-650-1827) 및 문화관광과(063-650-162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 민 의 견 서

사 업 명	순창 군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 결정(폐지)(안)			
열람기간	2026. 10. 1. ~ 2026. 10. 14. (공고 익일로부터 14일간)			
의 견 제 출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순창군 공고 제2026 - 964호

순창 군계획시설(근린공원:대모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공고

1. 순창군 고시 제2026-127호(2026. 6. 30.)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순창 군 계획시설(대모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 및 인가에 대하여 군관리계획(경미한변경)을 포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경우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순창군수

■ 군계획시설(근린공원:대모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변경 부분에 한함”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대모공원	근린공원	순창읍 백산리 산55번지 일원	115,165	증)3,305	118,470	‘77.12.30	

■ 군계획시설(근린공원:대모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대모공원	◦ 대모공원 면적 결정(변경) - 기 정 : 115,165㎡ - 변 경 : 증)3,305㎡ - 변경후 : 118,47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의한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일부선형 및 면적 변경

■ 군계획시설(근린공원:대모공원)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시 설 구 분			부 지 면 적(㎡)			구성비 (%)	시 설 내 용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15,165	증) 3,305	118,470	100.0	시설률:32.8%(법적기준 40% 이하)
공 원 시 설	계		38,856	감) 39	38,817	32.8	
	관리시설	도로	4,293	감) 39	4,254	3.6	도로, 산책로, 데크산책로
		광장	197	-	197	0.2	잔디광장
	교양시설	교양시설	33,515	-	33,515	28.3	홀어머니 산성
	편익시설	편익시설	851	-	851	0.7	화장실, 휴게쉼터, 주차장
공 원 시 설 외	녹 지	녹 지	76,309	증) 3,344	79,653	67.2	원지형 녹지
시 설 률	기정 (38,856㎡/115,165㎡)×100%=33.7%				변경 (38,817㎡/118,470㎡)×100%=32.8%		
건 폐 율	기정 (80㎡/115,165㎡)×100%=0.07%				변경 (80㎡/118,470㎡)×100%=0.068%		
공원시설 변경비율	공원시설 변경 부분의 증감면적 / 공원시설 부지면적×100 = 3,383㎡/38,856㎡×100% = 8.7%						

• 조성계획 세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번호		세 부 시 설 명		부 지 면 적 (㎡)			건축면적(㎡)				동수(동)		층수(층)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15,165	증) 3,305	118,470	80	80	80	80	8	1	1	1	
소 계							38,856	감) 39	38,817	80	80	80	80	8	1	1	1	
공 원 시 설	관 리 시 설	도로	계				4,293	감) 39	4,254	-	-	-	-	-	-	-	-	
			1-1	1-1	도 로	도 로	485	-	485	-	-	-	-	-	-	-	-	L=155m
			1-2	1-2	산책로	산책로	3,808	감) 39	3,769	-	-	-	-	-	-	-	-	L=1,809m
		광장	계				197	-	197									
			1-3	2-1	잔디광장	잔디광장	197	-	197	-	-	-	-	-	-	-	-	-
	- 공 원 관 리 시 설	공원 관리 시설	계				-	-	-	-	-	-	-	-	-	-	-	
			-	3-1	-	게시판	-	-	-	-	-	-	-	-	-	-	-	3개소
	교 양 시 설	교양 시설	계				33,515	-	33,515	-	-	-	-	7	-	1	-	
			2-1	4-1	홀어미산성 (도지정문화재)	홀어미산성 (도지정문화재)	33,515	-	33,515	-	-	-	-	-	-	-	-	-
	편 익 시 설	편익 시설	계				851	-	851	80	80	80	80	1	1	1	1	
			3-1	5-1	화장실	화장실	210	-	210	80	80	80	80	1	1	1	1	
			3-2	5-2	휴게쉼터1	휴게쉼터	461	-	461	-	-	-	-	-	-	-	-	
			-	5-3	-	주차장	180	-	180	-	-	-	-	-	-	-	-	5대
녹 지			소 계				76,309	증) 3,344	79,653	-	-	-	-	-	-	-	-	
			5-1	6-1	원지형녹지	원지형녹지	76,309	증) 3,344	79,653	-	-	-	-	-	-	-	-	-

■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54-5번지 일원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 군계획시설(근린공원:대모공원)

2) 명 칭 : 순창 군계획시설(대모공원) 조성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변 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결정	순창읍 백산리 18-1번지 일원	115,165	증)3,305	118,470	
금회시행		84,064	증)3,305	87,36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 명 : 순창군수(건설과)

2)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 6. 30. ~ 2027. 12 31. (변경없음)

바. 열람기간 및 장소

1) 기 간 : 2026. 9. 30. ~ 2026. 10. 14.

2) 장 소 : 순창군청 건설과, 순창읍사무소

3) 의견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서면 제출

사.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조서 참조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자. 관련도면 및 세부조서 등 : 게재 생략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과(063-650-1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 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계	21필지			87,369	84,064					
계	21필지			87,369	87,369					변경
1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18-1	전	694	694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18-1	전	694	694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2	"	19	전	198	198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2	"	19	전	198	198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3	"	20	전	268	268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3	"	20	전	268	268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4	"	32	전	446	446	대*암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4	"	32	전	446	446	대*암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5	"	33-1	전	2,973	2,973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5	"	33-1	전	2,973	2,973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6	"	34-1	전	272	272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6	"	34-1	전	272	272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7	"	35-1	전	937	937	대*암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7	"	35-1	전	937	937	대*암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8	"	산48-2	임야	181	181	김*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길 **			
8	"	산48-2	임야	181	181	김*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길 **			
9	"	산50-2	임야	32	32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지분 3306 /3471
						이*호	순창군 구림면 월정리 ***			지분 165 /3471
9	"	산50-2	임야	32	32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지분 3306 /3471
						이*호	순창군 구림면 월정리 ***			지분 165 /3471
10	"	산51-1	임야	4,354	4,354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0	"	산51-1	임야	4,354	4,354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1	"	산52-6	임야	5,496	5,496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1	"	산52-6	임야	5,496	5,496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2	"	산52-1	임야	6,864	6,864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2	"	산52-1	임야	6,864	6,864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3	"	산52-7	임야	3,327	3,327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3	"	산52-7	임야	3,327	3,327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4	"	산53-1	임야	330	330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4	"	산53-1	임야	330	330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5	"	산54-5	임야	10,946	10,946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5	"	산54-5	임야	10,946	10,946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6	"	산54-3	도로	1,094	1,094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6	"	산54-3	도로	1,094	1,094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7	"	산54-4	임야	14,799	13,951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7	"	산54-4	임야	14,799	14,799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 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8	"	산56-2	임야	6,356	6,356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8	"	산56-2	임야	6,356	6,356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9	"	산58-1	임야	4,347	4,347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19	"	산58-1	임야	4,347	4,347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20	"	산59-2	임야	18,342	15,938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20	"	산59-2	임야	18,342	18,342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21	"	산59-3	임야	5,113	5,060	홍*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 *층			
21	"	산59-3	임야	5,113	5,113	홍*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 *층			

주 민 의 건 서

종 류	군계획시설(근린공원:대모공원)			
명 칭	순창 군계획시설(대모공원) 조성 사업			
공람기간	2026. 9. 30. ~ 2026. 10. 14.			
의 건 제 출 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공고 제2026-41호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존치기간(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농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25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 순창군농업
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63-650-5153, Fax 063-650-513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지도육성담당
김소이(☎063-650-51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제16조 중 “2026년 12월 15일까지” 를 “2031년 12월 15일까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기금존치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6년 12월</u> <u>15일까지</u>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 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존치기한) ----- ----- ----- <u>2031년 12월</u> <u>26일까지</u> ----- ----- ----- -----.